

—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의 나아갈 길  
—

박재현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 1. 들어가며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이 10년 동안 해 온 일을 회고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행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회고문을 써 본 적이 있었던가 고민하며 그동안 국립국어원의 국어 능력 평가 사업에 관여하였던 일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이 국어 능력 평가 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어 능력 인증 시험'과 같이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국어 능력 검정을 시행할 때 필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출제와 성적을 처리하는 일을 하였다. 2008년에는 '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사업의 책임을 맡아 문법 능력을 중심으로 군 간부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2013년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문항 개발과 채점 등을 하였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이다. 평균 67점의 매우 정상적인 분포의 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계급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한 인터넷 신문에서 “군 간부 국어 실력은 ‘양’”이라고 제목을 달아 발표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직접 통화를 하니 평균 67점은 ‘양’이 맞다고 하였다. 언론 기사에 국방부는 난리가 났고, 연구 책임자인 나에게 연락이 왔다.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다.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군 장병의 국어 능력과 관련된 국방부의 연락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 일로 군은 비상이 걸리고 나라는 초긴장 상태가 되었는데, 오히려 국어 능력 관련 보도에 따른 나의 긴장은 일시에 해소되었다.

이 일로 깨달은 것은 국어 능력 점수가 군 내부의 복잡다단한 모든 현상을 사실 그대로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의 국어 점수가 고급 간부의 점수보다 높다고 하여 고급 간부의 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이는 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어휘 선택이나 바른 문장을 쓰는 데 필요한 어법 차원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과 해당 분야에서 실제 사용하는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해당 분야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문법적 정확성 차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기 위해 대전 육군본부의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이때 연구진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이야기도 들었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군 간부들이 교육 기관에서 접하는 야전 교범의 언어를 개선하

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아이디어이다.

우리는 띄어쓰기를 조사, 의존 명사, 접사, 어미 등에 대한 문법 지식을 통해 익히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임관 초급군 교육 기관에서 접하는 야전 교범은 학생에게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여기에 있는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잔재, 미군의 FM(field manual, 야전 교범)을 번역하면서 등장한 번역투 문장들이 그대로 한국군의 언어 인식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학생 때부터 교과서의 글을 거의 진리처럼 신봉하도록 학습된 초급 간부들은 야전 교범의 어휘와 문체를 군대 언어 공동체의 규칙과 관습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이미 부적합한 언어 표현에 노출된 군 간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직접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이들이 군 입문기에 교과서처럼 접하는 야전 교범의 언어를 다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국어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얻은 이러한 통찰도 후속 연구나 사업의 부재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듯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어 능력 평가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나 국어 능력 신장은 '국민'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 25명이 있는 초등학교의 한 교실을 생각해 보자. 담임 교사는 25명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학급 회장과 일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글을 정확하게 쓰는 데 필요한 지식을 알려 주고 있다. 학급 대부분은 평범한 아이들이다. 하지만 비행이 잦아 동네 파출소에 몇 차례 불려갔던 아이, 부모가 늦게까지 일해 늘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해 독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아이, 돌아가며 책 읽을 때를 빼놓고는 입을 열지 않는 아이, 친구들과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쉬는 시간에도 늘 혼자 있는 아이, 낮은 자존감에 거친 말투로 학급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도 있다.

여기에서 담임 교사는 학급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의 다면성을 깨닫는다. 첫째, 이미 월등한 실력을 보유한 임원들의 국어 능력을 더욱 신장하여 학급의 일 처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 둘째, 25명 전원의 국어 점수를 3점씩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 셋째, 뒤편에 앉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이다. 지난번 시교육청에서는 학급 회장만 대상으로 국어 능력을 측정한 바 있고, 이번에는 전체 조사라고 하면서 우리 지역 전체 667개 학급 중 1명을 선정하여 국어 능력을 측정하여 ‘보통’ 판정을 한 적이 있다(현재 전 국민 실태 조사의 표본 수인 3,000명을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25명 학급 667개인 1만 6,000여 명 중에서 1명꼴이다). 담임 교사는 그 ‘보통’의 능력이 지시하는 바를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급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 2. <국어기본법>에 의한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에서는 법률 제11690호인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국어 능력 검정 관련 조항에 의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태 조사 결과를 5년 주기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소 5년 주기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 능력에 관한 사항

〈국어기본법〉 제23조(국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어 능력의 검정 방법)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국어 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그 전에도 다음과 같이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김문오 외(2005),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성규 외(2006), 국어 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동환 외(2008), 국어 능력 검정 모의시험 방법 연구,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9),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소원 외(2012),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김종철 외(2013),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이러한 기초 연구와 함께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 연구도 있다.

- 박재현 외(2008), 국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윤여탁 외(2009),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위의 연구 목록에는 ‘평가, 조사, 시험, 실태 조사, 검정’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국어기본법>에도 제9조에는 ‘실태 조사’, 제23조에는 ‘검정’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에서조차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평가의 영역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10년여에 걸친 기초 연구와 조사 연구의 축적, <국어기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값진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김종철 외(2013)의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3,000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 전국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평균 점수만 도출한 것이 아니라 ‘앵고프(Angoff)’라는 과학적 방식으로 등급 분할 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표 1] 2013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개관

영역	문항 수	시간(분)	배점	평균 점수	성취도	조사 방식
읽기	20	40	300	190.66	64%	선택형(객관식)
문법	10	10	150	88.14	59%	
듣기	10	15	150	108.88	73%	
쓰기	3	30	250	122.07	49%	수행형(주관식)
말하기	3	15	150	69.79	47%	서답형(주관식)
합계	46	110	1,000	579.62		

출처: 김종철 외, 2013

기초, 기초 미달로 국민의 국어 능력을 등급화하였다. 또한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5년 주기의 실태 조사를 염두에 두고 2018년에 실시할 평가와 비교하기 위해 평가 영역별로 가교 문항을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평가 시행의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 점, 변인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에 사용한 조사 도구의 특성과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의 주요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체 국어 능력은 우수가 11.9%, 보통이 33.4%, 기초가 45.9%, 기초 미달이 8.8%이다.
- ② 다른 영역에 비해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기초 및 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이 높다.

- ③ 성별: 남성(574.65점)과 여성(584.75점)의 국어 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 ④ 연령별: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어 능력 점수가 낮아진다(20대(600.76점), 30대(598.80점), 40대(572.98점), 50대(549.27점)).
- ⑤ 지역 규모별: 대도시가 중소 도시보다 국어 능력 점수가 높다(대도시(593.37점), 중소 도시(563.54점), 읍면 지역(576.87점)).
- ⑥ 직업군별: 정신 노동자(603.91점)가 육체 노동자(555.59점)에 비해, 기타(588.21점)가 육체 노동자에 비해 국어 능력 점수가 높다.
- ⑦ 학력별: 대학교 재학 이상(600.65점)이 고등학교 졸업자(559.55)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538.55)보다 국어 능력 점수가 높다.

### 3.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반성

앞서 언급한 10년여의 연구가 지향하는 근본 목표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부단한 연구의 근본 목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23조에 잘 나타나 있다.

제23조(국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 보는 이 시점

에서, 국어 능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근본 취지인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책의 시행 주체는 누구인가,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예산과 인력 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나 역효과는 없는가 등 일련의 질문에 뾰족한 해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2013년의 연구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평가의 유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시행한 것이다. 그 정도의 자원으로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한 점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반박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3,000명의 표본 수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했다고 말하기에 충분한가? 능력 평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설문 조사라면 3,000명의 표본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능력을 평가하는 데 4,799만 761명(2010년 통계청 전국 총 조사 인구 기준)에서 3,000명이면 1만 6,000명 가운데 1명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경향성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파악한다는 점이다.
- ② 통계청의 인구 조사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교육부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다. 이 밖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국립국악원에서 국민의 국악 능력을 파악하는가, 국립박물관에서 역사 능력을 평가하는가? 들어본 적이 없다. 심지어 기관명에서 목표를 드러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조차 전 국

민의 체력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을 ‘전 국민’으로 이해한 것은 아닌가?

- ③ 성인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타당한가? 이번 평가 도구는 제한된 예산과 평가의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최적화한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자면, 성인의 국어 생활에서 선택형 문항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가, 자연스럽게 말과 글을 사용하면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문법 지식을 선택형으로 묻는 경우가 있는가, 개별 조사원의 방문을 통한 조사는 평가의 시간과 공간, 평가의 긴장도 등 평가 환경의 균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등 여러 차원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④ 평가의 결과로 밝히지 못한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성과 남성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만약 ‘성별’ 변인과 ‘연령’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작용을 추정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처럼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 참여 비율이 낮은 여성의 점수가 남성의 점수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읽으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
- ⑤ ‘대도시 > 읍면 지역 > 중소 도시’라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통제하지 못한 다른 변인은 무엇인가?
- ⑥ 정신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 통해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현대 노동 환경에서 정신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엄격한 구분이 가능한가? 육체 노동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위에 나열한 여섯 가지 미시적인 질문이 생성해 내는 메시지는 ‘연구 결과로 과연 구체적인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 정책 수립이 가능한가?’이다. 현재의 평가 방법은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도구에 사용된 영역과 변인은 국어 능력 신장을 전제로 한 것인가, 평가 그 자체를 전제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라는 대전제는 2013년 국어 능력 평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미 무색해졌다. 평가에 사용한 1년 외에 남은 4년 동안 심도 있는 원인 분석, 교육 내용 마련과 교육 시행 등 정책 제언이 있었지만 2013년 국어 능력 평가의 결과를 활용한 정책의 연계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는 <국어기본법> 자체가 갖는 구조적 차원의 원인이 있다. 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검정을 독립 조항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5년 주기로 마련해야 하는 발전 계획에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함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실태 조사든 검정인든 실시 후 국어 능력 평가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어 능력 신장에 대한 후속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기 십상이다. 과학적 평가 도구로 5년마다 국민의 국어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후속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근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사실 <국어기본법>에는 국어 능력 평가를 5년 단위로 실시하라는 문구는 없다. 5년 단위로 마련해야 하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실태 조사를 반영하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5년 단위의 대규모 평가가 아니더라도 매년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국어 능력의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평가 자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교육 내용 개발, 교육 평가 등의 환류 체계 내에서 정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 4. 향후 국어 능력 평가가 고민해야 할 지점

사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표본 수를 늘리고 직접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규모 표본 내에 각 집단의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집단별, 직종별 능력을 전체 국어 능력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어 능력 평가의 시행 범위를 좁히고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 4.1.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을 ‘전 국민’으로만 이해한 것은 아닌가? 마치 “10년 전에 비해 16세 학생의 평균 키가 5센티미터 커졌습니다.”와 같은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을 한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 1만 6,000 대 1이라는 비율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집하는 것과 국어 능력 신장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의 국어 능력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을 해야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 직무

연수의 주요 수강생은 공무원, 군인, 교사이다. 모두 국민 공통 교육을 충분히 받고 매우 높은 수준의 선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평가 대상의 선정과 더불어 이러한 직접 교육 대상의 선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 4.2.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어 능력을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성인의 국어 사용 환경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 기관이 정책의 시행 주체라고 할 때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말과 글의 사용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물론이고 적절하기도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열린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제목은 떠오르는데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은 그리기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단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조직망을 갖추고 시행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지점도 있고, 여성가족부처럼 세부 조직망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근이 가능한 분야는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 분야이다. 이는 최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채용에서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직업 문식성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수준별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은 성인 문식성 핵심 교육 과정(Adult Literacy Core Curriculum)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부터 학문 분야와 직업 분야로 진로를 구분하는 독일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250억 원 규모의

교육 정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인의 국어 능력 평가는 단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초·중등 교육의 영역별 점수 외에 실제적인 국어 사용의 내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업 문식성, 매체 문식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4.3.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도구와 관련해 2013년의 평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 환경의 균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별 방문 조사는 면접원 개인이 조성하는 평가 환경의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 직접 평가를 한다면 집합 평가를 통한 통제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의 도입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성인의 국어 생활을 고려할 때 선택형 지필 평가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공공 기관에 방문해 서식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언어 수행 장면에서 개인이 직접 산출한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도, 점수를 산출하여 평균을 내고 비교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국어 능력의 실태를 조사해 구체적인 처방을 위해서라면 시행 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 5. 나가며

〈국어기본법〉10년 시행 후, 세부 정책인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여러 고민을 나열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과 고민이 필요한 지점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앞서 이야기한 초등학교 교실로 다시 시선을 옮겨 보자. 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 동안 자신이 맡은 학급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담임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독서 습관 기르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어 사용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다. 예산도 그리 크게 소요되지 않고 단기간은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25명 전체 인원의 국어 점수를 일괄적으로 3점씩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험을 쉽게 출제하면 가능하지만 학급 아동의 국어 능력이 신장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학급 임원의 국어 능력을 더 신장하는 방안과 뒤편에 앉은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여 그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남았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책은 미국의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에서 1992년과 2003년에 실시한 성인 문식성 조사(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에서 전국 107개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 1,200명을 조사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이미 공교육과 사교육의 적절한 도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능력을 보유한 아이들(공무원, 군인, 교사)에게 다가갈지, 아니면 뒤편에 앉아 있는 국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워 국어 능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지를 생각한다면 안개 속에서도 나뭇 선명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국어 능력 검정과 관련된 제23조 바로 위인 제22조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제22조(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동환 외(2008), 《국어 능력 검정 모의시험 방법 연구》, 국립국어원.
- 김문오 외(2005),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성규 외(2006), 《국어 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종철 외(2013),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 박재현 외(2008), 《국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윤여탁 외(2009),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9),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소원 외(2012),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